

P. R

필

불필요

자 체 통 제	기안처 기획과 운경병	전화번호	근거서류접수일자
------------------	-------------------	------	----------

운영기획	사무기획	파장	도시계획	국장	제2부시장	시	장
------	------	----	------	----	-------	---	---

9.4 9.4 9.4 9.11

관
계
관
서
명

법제
문
건

시정
추진
과
건

비무국
장

1963. 9. 12
재

기
안
년
월
일

1963. 9. 3

시
행
년
월
일

1963. 9. 16

보
존
년
한

분
류
기
호

415

전체통제

X

종
결

정
서
기
장

01944

경
수
참
유
신
조

발
신

제
목

건축선 지정 신청

시내. 종로구 계동, 25의11번지 송석반
으로 부터 출원한 마포구 삼수동 32의1번지 내
건축선 지정신청이 있어 해당 조사 하은바 별
지 북명서와 같이 지량이 없다고 다른 뒤
유기 별안과 같이 시행코려 절차를 바꿨니다
"안부"

서울특별시 고시 제 784호
건축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안계 11번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계획아랫
관할구함 건축하여 비치하고 일반의 공익을

공한가.

1963. 7. 16.

서울특별시 강. 은. 태. 일.

종 목	위	치	쪽	원	연	장	비	고
건축선	마포구	삼수동 37~1	2m	38.4				

안 4

서도제 5.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25의11호

승 석 번

1963. 8. 22자로 출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수동 37의 1번리 내 건축선 지정신청에 관하여 별 지 고시문과 같이 지정함.

1963. 7. 16.

서울특별시 강. 은. 태. 일.

(별지 고시문 및 신청서 첨부)

안 4

수 신	마포구 청 강	발	신	의 명	의 명	의 명
제 목	건축선 지정			총	무	아

시어 종로구 계동 125~11번지. 송 석 범
 출간에 의하여 지구간비 상수동 37의 1번지 비
 별리 고시 문 및 도면과 같이 건축선을 지정 하였으
 니 본건 시행에 무리 없도록 할 것
 우첨. 고시 문 및 도면 각 1부 끝
 "인

수 신	공 보 실 랑	발 신	도시계획국랑
제 목	건축선 지정		


별리와 같이 고시 하였으니 시보에 게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첨. 고시문 1부 끝.

부 명 서

별에 의하여 시내 마 조구상 수동 37번지 / 호내

현장을 조사 하온바 하기와 여하유기에 부명하라이다

서기 1962년 8 월 3 / 일

제 성명 지방토목기사보 은 경 병 

서 읍측 별 서 장 귀 하

기

장

소 마 조구 상수동 37번지 1번지

토지 소유권

권 계 사 측 리 (본인소유)

현

마로동에서 양인리간 도로변(상수동버스종점) 북측에 위치하고 인는 여리로서 지대는 평안시임

측로로저하능도도독원

현장 측원 3m 현강 28.4m

도도원결

권 계 시설 도로 (3.5m)에 연결 됨.

배수원결

권 계 시설 도로 중앙에 매설된 배수관이 연결 됨.

여부 의

의 권 별리 도로와 같이 건축선 리하여도 도로 및 배수 현각 등 지강없다고 사 료 됨.

건축선지정신청서

인행기

서기 1963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종로구계룡 1로번지

宋錫範

서울특별시장 귀하

건축대지조성키위하여 하기위치의 건축선지정요
저 관세도서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기

대지위치 서울특별시마포구상수동 32번지

건축선의위치및 가격금연장

위치 서울특별시 구 가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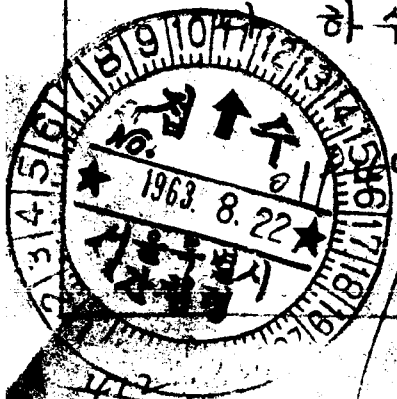
건축선의 위치 표시 방법

가. 도로완성

나. 측구축조

하수관매설

건축제 18조 에 의한 표방매설





米課稅證明書

No. 3418 의 1호

住所 또는 店址 서울特別市 鍾路區桂洞 125의 1호

姓名 宋 錫 範 (印)

營業場所

營業項目

證明書의 使用目的 건축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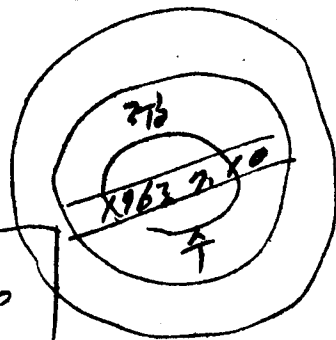
위의 사람은 地方稅法 施行令 第=十條 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여 發給한 날 現在 課稅 實績이 없음을 證明함

다만 이 證明의 有效期間은 發給한 날의 翌 日 부터 計算하여 30日 까지임

1963 年 7月 10日

서울특별시 鍾로 구청장

구청장 김한성 (印)





未課稅證明願

홍삼 稅務署長 貴下

No. 51

住所 玉台里 4가 특별시 區 洞 街 番地

營業場所

商號

姓名

營業種目

證明書의 使用目的

證明書의 所屬數量

國稅徵收法 施行令 第十五條의 規定에
依하여 發給하는 날 現在課稅實績이 없음을
證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3年 7月 2日

申請者

朱錫範

627

表記事實을 確認한바 相違없음을
證明함

西紀一九六三年 七月 三日

稅務署長





이證明書 有効期間은 1963年 8月 3日까지임

備考

有効期間의 計算方法은 發給한 날의 翌日부터 計算하여
30日에되는 날의 밤12時까지임

626

土地、建物登記簿原本用紙 (両面)

(所有権以外) 権利	區
	

乙		區 (雜有房)	
	番順號位		
	事項欄		
	番順號位		
	事項欄		
	番順號位		
	事項欄		

629

621

(類D) 某區外圍圍牆內等處

此謄本은登記簿에依하여이를作成하고
茲에登記簿와相違없음을認證함

西紀壹九六 年 月 日

서울地方法院

書記